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8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박기재, 이병도, 김소영,
김춘례, 이광성, 최웅식, 이영실,
박순규, 이승미, 김화숙, 이준형,
신정호, 김정환, 봉양순, 김용연,
서윤기, 김동식, 김소양, 오현정,
이정인 의원 (21명)

1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·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.
- 서울시 거주 생존애국지사는 현재 10명으로서 이들의 평균연령이 95세에 이르고, 2013년 보훈명예 수당(월10만원)을 최초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, 이분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 및 지원이 낮으므로 확대가 매우 시급함
- 금년은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생존애국지사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하여 연2회 (3·1절, 광복절)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을 명문화하고, 직계 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까지 확대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진작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(안 제3조제1호)
- 나. 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, 지급시기 및 금액을 구체화함(안 3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의 “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”을 “생존애국지사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의 “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”을 “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(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(생략)</p> <p>1. <u>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 (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.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(지원사업)제1호의 “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”을 “생존애국지사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”으로 함에 따라 지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액 발생
- 같은 조례안 제3조(지원사업)제3호의 “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”을 “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 유족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(직계후손이 수권자일 경우 그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으로 한다”고 개정하는 것은 현행 위문품 제공 없으며 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지원내역은 변동없이 지원대상 확대(직계후손(자녀 등)의 형제·자매를 포함)에 따른 추가 지급액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액
-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추가 지급액

나.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- 보훈명예수당 지급인원과 추가 지급액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추가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
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보훈명예수당과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의 지급인원·지급액 등은 소관 부서 관련 자료 준용

- 보훈명예수당 : 생존 애국지사(10명)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
-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 유족(1,860명)에게 10만원, 연 2회 지급
위문품 제공 없음

(단위 : 명)

계	본인 (애국지사)	배우자	자녀	자녀의 배우자	손자녀	기타
1,860	10	108	862	28	839	13

-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'보훈대상자 등 지원' 사업 예산사업설명서 -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7,496,000천원(연평균 1,499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액 (조례안제3조제1호)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	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추가 지급액 (조례안제3조제3호)	1,487,200	1,487,200	1,487,200	1,487,200	1,487,200	7,436,000
	소계(b)	1,499,200	1,499,200	1,499,200	1,499,200	1,499,200	7,496,000
□ 총 비용(b-a)		1,499,200	1,499,200	1,499,200	1,499,200	1,499,200	7,496,0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최경희

☎ 02-2180-7944

e-mail : hiru90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액
-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추가 지급액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 비용 = $\sum_{i=1}^5$ (보훈명예수당 연간추가지급액 +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연간추가지급액) i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- 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액(≒ 60,000천원)
 - 보훈명예수당 연간 추가 지급액 = 매월 지급인원 × 매월 추가 지급액 × 12개월
 - = 10명 × 100천원 × 12개월
 - = 12,000천원
 - 매월 지급인원 : 10명(서울시 생존 애국지사 인원 적용)
 - 매월 추가 지급액 : 100천원(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액)
-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추가 지급액(≒ 7,436,000천원)
 -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연간 추가 지급액 = 추가 지급인원 × 지급액 × 지급횟수
 - = 7,436명 × 100천원 × 2회(3.1절, 광복절)
 - = 1,487,200천원
 - 추가 지급인원 : 7,436명(유족중 직계후손(자녀 등)의 형제·자매 포함에 따른 인원 적용)
 - 지급액 : 100천원(2019년 지급액 적용)
 - 지급횟수 : 2회(2019년 3.1절, 광복절 기념일 지급횟수 적용)

※ 서울시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상세현황(직계후손이 수권자일 경우 그 형제·자매 포함)

(단위 : 명)

계	본인 (생존 애국지사)	유족						직계후손(자녀 등)의 형제·자매
		소계	배우자	자녀	자녀의 배우자	손자녀	기타	
9,296	10	9,286	108	862	28	839	13	7,436

주 : 1. 2018년말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인원

2. 조례안 개정사항에 따른 지급인원 굵은선 표기

자료 :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(2019)